

우리나라 16개 시·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Public Library Staff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김 영 석(Young-Seok Kim)*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도서관법시행령 대비 사서직원수 |
| II. 연구 목적 및 방법 | 3. 한국도서관기준 대비 직원수 |
| 1. 연구 목적 | 4. 국제기준 대비 직원수 |
| 2. 연구 방법 | 5. 세 기준에 의한 직원수 비교 |
| III.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 6. 우리나라와 영국의 인력 현황 비교 |
| 1. 공공도서관 전체 인력 현황 | IV. 맺음말 |

초 록

적정 규모의 인력은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시도가 공공도서관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766개 공립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 즉 도서관법시행령, 한국도서관기준, 국제기준인 IFLA/UNESCO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법정 사서수의 46%만을 충족하고 있고,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전체 직원의 경우 78%를 충족하고 있고, 사서직원의 경우는 44.5%만 충족하고 있다. IFLA/UNESCO기준에는 35.7%만 충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서직원 충원율이 낮고, 특히 전체 직원수는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직원, 공공도서관 인력, 사서, 한국도서관기준

ABSTRACT

Staff are absolutely important for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This study aims to reveal how much the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secure public library staff. Three measurement tools for analys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staff of the 766 public libraries in Korea ar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and IFLA/UNESCO Guidelines. It was revealed that the public libraries in Korea satisfies 46% of the professional library staff standards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78% of the entire library staff need and only 44.5% of the professional library staff need of Korean Standards for Libraries, and only 35.7% of the entire library staff need of IFLA/UNESCO Guidelines. The study revealed that the ratio of satisfaction of the need of professional library staff is low and in particular, public libraries do not satisfies the entire library staff need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IFLA/UNESCO Guidelines.

Keywords: Public library, Librarian, Library staff, Professional library staff, Human resources,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9s9kim7@hanmail.net)

• 논문접수: 2013년 11월 21일 • 최초심사: 2013년 11월 28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0일

I. 머리말

모든 기관은 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관이 자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활동은 인적자원, 즉 직원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직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의, 업무 내용 그리고 역할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에 충분한 수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무를 수행할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외에도 문화센터,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는 곧 도서관업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Gill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에서 도서관직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였다.

직원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다. 인건비는 보통 도서관 예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받은 자발적인 직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직원의 수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Gill이 주장한 것처럼 직원 인건비는 도서관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공공도서관을 건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때때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자체는 '도서관 신축시 신규 인력 충원 없이 기존 도서관의 인력을 배치·운영함에 따라 도서관서비스 질 및 직원 사기 저하'¹⁾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수의 직원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그 도서관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도서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서관 본래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안), p.76.(미간행보고서)

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도서관이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이용자가 찾지 않는 도서관이 된다.

세계 각국은, 예산 부족의 이유로 도서관에 충분한 직원을 배치하지 않아 공공도서관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령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도서관에 배치하여야 할 직원의 수를 정하여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과 기준 그리고 외국의 기준 등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 세 가지 기준은 첫째, 법적기준인 '도서관법시행령상의 기준', 둘째, 권장기준인 '한국도서관기준'(2013), 셋째, 국제기준인 'IFLA/UNESCO 가이드라인'이다. 이 세 기준을 토대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인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노영희,²⁾ 안인자,²⁾ 윤희윤,³⁾ 박철완 외 4인⁴⁾ 등에 의해서 일부 연구가 수행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도서관의 전체 인력 현황을 국내외의 세 가지 기준을 평가 도구로 사용하여 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II.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사서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인력을 사서직, 행정직 그리고 기타 직원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인력 현황을 각종 직원 배치기준과 비교하여 현재의 인력이 어느 수준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수준을

-
- 2) 노영희, 안인자, "사서인력의 경력이동 및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4호(2009. 12), pp.147-167.
 3) 윤희윤,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 개정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1호(2012. 2), pp.55-76.
 윤희윤, "국내의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3), pp.73-95.
 4) 박철완 등,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에 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3호(2012. 9), pp.211-23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4호)

국내외의 여러 기준과 비교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한 통계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⁵⁾의 2011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공공도서관은 2011년 말 기준 어린이도서관(78개관)을 포함한 총 786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개인 및 민간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20개의 사립도서관을 제외한 766개관의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우리나라 766개 공공도서관의 직원 현황을 첫째, 도서관법시행령상의 기준, 둘째, 한국도서관기준, 셋째, IFLA/UNESCO 가이드라인과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력 현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영국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을 16개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통계의 기준년인 2011년 말에 아직 자치단체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2013년 현재도 공공도서관이 1개관에 불과하여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립도서관의 인력 현황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립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운영하기 때문이다.

Ⅲ.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1. 공공도서관 전체 인력 현황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규모와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립 공공도서관(20개관)을 제외한 766개 공립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총 7,107명으로 1관당 평균 9.28명이다. 이 수치는 <표 2>와 같이 2008년도 이후 계속 감소한 것이다. 2008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사립 모든 공공도서관의 직원수는 1관당 평균 9.9명이었는데, 계속 감소하여 2011년 말 기준 9.1명으로 줄었다.

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인용 2013. 11. 15].

<표 1> 시도별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2011년 기준)

시·도 (도서관 수)	직원 현황(정규직)			
	사서직	행정직	기타*	합계
서울시(105)	617	198	351	1,166
부산시(29)	193	78	193	464
대구시(22)	152	41	156	349
인천시(31)	182	52	110	344
광주시(16)	90	37	95	222
대전시(22)	134	27	84	245
울산시(11)	56	21	50	127
경기도(163)	752	271	496	1,519
강원도(46)	132	54	130	316
충청북도(32)	100	68	90	258
충청남도(51)	120	91	121	332
전라북도(46)	133	54	130	317
전라남도(57)	166	71	163	400
경상북도(59)	184	83	183	450
경상남도(55)	232	99	135	466
제주도(21)	51	27	54	132
합 계(766)	3,294 (46.3%)	1,272 (17.9%)	2,541 (35.8%)	7,107 (100%)
사립도서관(20)	24	17	16	57
공·사립합계(786)	3,318 (46.3%)	1,289 (18.0%)	2,557 (35.7%)	7,164 (100%)

* 전산직 포함

<표 2> 공공도서관 직원 및 사서자격증 보유 현황⁶⁾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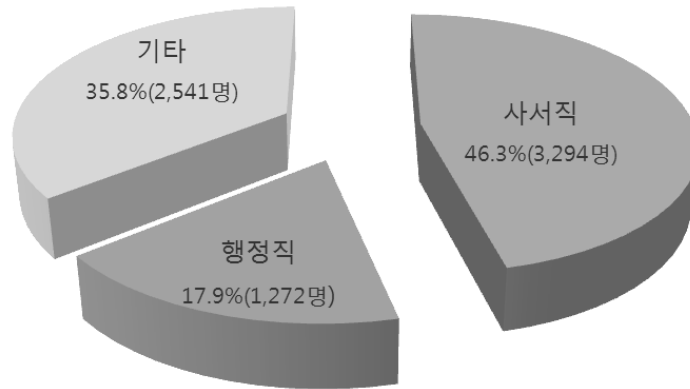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평균 증감율
1관당 정규직원	9.9	9.7	9.2	9.1	-2.02
사서자격증보유자	4.5	4.3	4.2	4.2	-1.7

<그림 1>과 같이 전체 직원 중 사서직원은 3,294명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고, 1관당 평균 4.3명이다. 행정직은 1,272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고, 1관당 평균 1.7명이다. 그리고 전산직을 포함한 기타 직원은 2,541명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있고, 1관당 평균 3.3명이다.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우리나라 786개 전체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6)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개 사립도서관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전계서.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4호)

총 7,164명이고, 이중 사서직원은 전체의 46.3%에 해당하는 3,318명이다. 그리고 행정직과 기타 직원은 각각 1,289명(18.0%)과 2,557명(35.7%)이다.



<그림 1> 우리나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직원구성

2. 도서관법시행령 대비 사서직원 수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그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전문성을 기준으로 전문직 업무와 비전문직 업무로 구분되는데, 전문직 업무는 사서직원이 담당하며 비전문직 업무는 행정직원이 담당한다.⁷⁾ 사서직원은 정보서비스 제공이나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분석, 제공 등과 같은 도서관의 고유 업무이며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⁸⁾ 문헌정보학자들은 사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통한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듯이, 사회에서의 교육은 사서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사서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을 통한 사회교육은 그 사회를 정화하고, 주민의 지식을 개발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 민중교육을 담당해야할 공공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⁹⁾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필요한 적정수의

7) 정동열, 도서관경영론(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p.114.

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3), p.31.

9) 한국문헌정보학회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의 이해(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p.357.

사서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에서 사서직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직원의 수를 『도서관법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는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 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 필요한 법정 사서수는 개별 도서관의 면적과 장서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도서관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 사서수를 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 동안 도서관 현장에서 『도서관법시행령』에 근거해 산출한 법정 사서수가 지나치게 많고, 현재의 사서수와 차이가 많아 도서관 현장에 적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면적과 함께 장서 수까지 고려하여 필요 사서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값을 현재의 인원과 비교하는 분석 결과를 도서관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면적만을 기초로 하여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법정 사서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사서수 산정 방법은 16개 시도별로 전체 도서관 면적을 산출하여 그 총합을 330㎡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개별 도서관의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 사서수를 산정하여 그 결과값을 16개 시도별로 합하여 16개 시도의 법정 사서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두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법정 사서수에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원(現員)에 가까운 결과값을 도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 21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이 도서관의 총 연면적은 46,701㎡이다. 이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기본 사서 인력(63명)과 추가 사서인력(120명)을 산출하면 총 183명이 되는데, 이수는 51명인 사서 현원과 격차가 너무 크다. 반면에 제주도에 있는 21개 도서관의 개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본 사서인력과 추가 사서인력을 산출하여 그것을 합하면 총 169명이 된다. 물론 개별 도서관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 간에 큰 차이(14)는 없지만 개별 연면적으로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 현 인력 상황과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계산 방법이므로 그 산출 방법에 신뢰성이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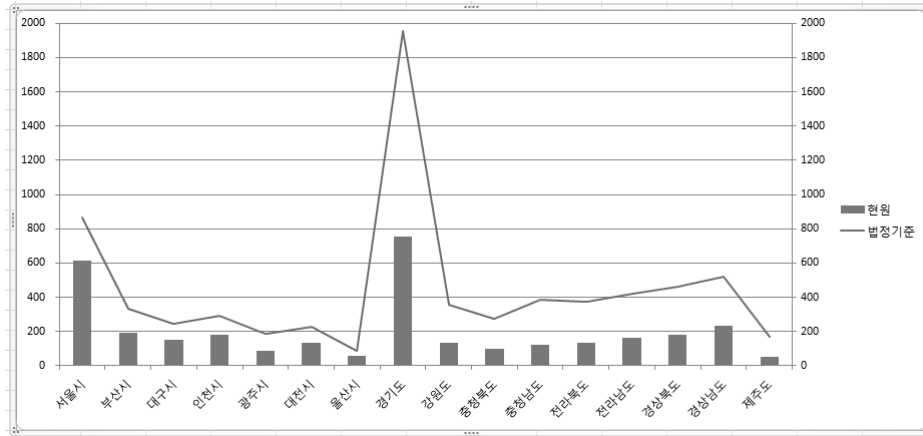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786개관 중에서 사립도서관(20개관)을 제외한 총 766개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도서관법시행령 대비 사서직원수(2011년 기준)

시·도	법정 사서직원수	현원 (%: 법정 사서직원수 대비)	부족
서울시	867	617(71.2)	250
부산시	331	193(58.3)	138
대구시	246	152(61.8)	94
인천시	290	182(62.8)	108
광주시	188	90(47.9)	98
대전시	227	134(59.0)	93
울산시	89	56(62.0)	33
경기도	1,954	752(38.5)	1,202
강원도	359	132(36.7)	227
충청북도	275	100(36.4)	175
충청남도	388	120(30.9)	268
전라북도	373	133(35.7)	240
전라남도	420	166(39.5)	254
경상북도	465	184(39.6)	281
경상남도	523	232(44.4)	291
제주도	169	51(30.2)	118
합 계	7,164 (100%)	3,294 (46.0%)	3,870 (54.0%)

면적을 기준으로 사서수를 산정했을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사서수는 총 7,164명이다. 그런데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서수는 3,294명으로 필요한 전체 사서수의 50%에도 못 미치는 46%에 그치고 있어, 법정 사서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870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법정 사서직원수 대비 현재의 사서충원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71.2%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은 울산으로 62%, 그리고 대구가 61.8%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사서충원율이 낮은 자치단체로는 충청남도가 30.9% 그리고 제주도가 가장 낮아 30.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봤을 때 〈그림 2〉와 같이 서울을 포함한 광역자치시 공공도서관의 사서충원율은 높고, 반면에 자치도의 사서충원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부터 울산시까지의 법정사서수 기준을 나타내는 선 그래프와 현원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 간의 간격이 좁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는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간의 간격이 자치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법정 사서직원수 기준 대비 사서직원 현원

3. 한국도서관기준 대비 직원수

한국도서관협회는 2013년에 새로운 ‘한국도서관기준’¹⁰⁾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도서관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사서인력 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사서인력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현재의 인력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서인력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사서인력 충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사서인력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3년에 새로 마련된 한국도서관기준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직원 배치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공공도서관의 직원 배치기준

서비스 대상인구 구간(명)	기본인력(A)	증원인력	
		사서직원(B)	기타직원(C)
1만 미만	3명 (사서직원 3명 또는 사서직원 2명과 기타직원1명)	인구 9천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1만 ~ 2만 미만			
2만 ~ 5만 미만			
5만 ~ 10만 미만			
10만 ~ 20만 미만			
20만 ~ 50만 미만		인구 1만명당 1명	
50만 이상			

10)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전게서.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4호)

한국도서관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직원수를 산정하면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직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 4>에 근거해서 <표 5>와 같이 도서관당 기본인력(A), 사서직원(B), 그리고 기타직원(C)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표 5> 한국도서관기준에 의한 공공도서관 직원수(2011년 기준)

시·도 (인구, 천명)	기본인력(A): 도서관당 3인 (도서관 수)	사서직원(B)	기타직원 (C = B/3)	전체직원 (D = A + B + C)
서울시(10,026)	315(105)	1,024	341	1,680
부산시(3,464)	87(29)	356	119	562
대구시(2,477)	69(23)	251	84	404
인천시(2,750)	93(31)	282	94	469
광주시(1,506)	48(16)	146	49	243
대전시(1,527)	66(22)	151	50	267
울산시(1,105)	33(11)	113	38	184
경기도(11,788)	489(163)	1,195	398	2,082
강원도(1,496)	138(46)	160	53	351
충청북도(1,539)	96(32)	160	53	309
충청남도(2,104)	150(50)	203	68	421
전라북도(1,802)	138(46)	192	64	394
전라남도(1,772)	171(57)	203	68	442
경상북도(2,638)	177(59)	277	92	546
경상남도(3,232)	165(55)	338	113	616
제주도(552)	63(21)	58	19	140
합 계(49,779)	2,298(766*)	5,109	1,703	9,110

* 사립도서관 제외

사립도서관을 제외한 우리나라 766개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기본인력(A)은 <표 4>의 기준과 같이 도서관 당 3인이다. 따라서 기본인력(A)은 총 2,298명이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 인구수에 따른 사서직원의 증원인력(B)은 개별도서관의 서비스대상 인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한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대상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경우 인구 9천명당 1명의 사서직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서비스대상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1만명당 1명의 사서직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산출한 사서직원의 증원인력(B)을 16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766개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사서직원은 5,109명이다. 기타 직원(C)은 사서직원(B)의 1/3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수는 1,703명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766개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전체직원수(D)는 A+B+C이기 때문에 9,110명이다.

한국도서관기준을 근거로 산출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사서(A+B) 및 전체직원수(D)를 현 인원수와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한국도서관기준 대비 사서직원 및 전체직원수

시·도 (인구, 천명)	사서직원 기준 (A+B)	사서직 현원 (명)	부족 (명)	전체직원 기준 (D)	전체 직원현원 (명)	부족 (명)
서울시(10,026)	1,339	617	722	1,680	1,166	514
부산시(3,464)	443	193	250	562	464	98
대구시(2,477)	320	152	168	404	349	55
인천시(2,750)	375	182	193	469	344	125
광주시(1,506)	194	90	104	243	222	21
대전시(1,527)	217	134	83	267	245	22
울산시(1,105)	146	56	90	184	127	57
경기도(11,788)	1,684	752	932	2,082	1,519	563
강원도(1,496)	298	132	166	351	316	35
충청북도(1,539)	256	100	156	309	258	51
충청남도(2,104)	353	120	233	421	332	89
전라북도(1,802)	330	133	197	394	317	77
전라남도(1,772)	374	166	208	442	400	42
경상북도(2,638)	454	184	270	546	450	96
경상남도(3,232)	503	232	271	616	466	150
제주도(552)	121	51	70	140	132	8
합 계(49,779)	7,407 (100%)	3,294 (44.5%)	4,113 (55.5%)	9,110 (100%)	7,107 (78.0%)	2,003 (22.0%)

조사·분석결과 한국도서관기준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공립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직원수는 9,110명이다. 그러나 현재 7,107명이 근무하고 있어 2,003명의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직원이 가장 많이 부족한 자치단체는 경기도로 563명이다. 그 다음은 서울시로 514명의 직원이 부족하고, 경상남도는 150명, 인천시는 125명의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한국도서관기준을 근거로 봤을 때 전체 직원수에 있어서 단 8명만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도 사서직원수에 있어서는 7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처럼 직원수가 아닌 사서수의 현황을 살펴볼 경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전체 직원의 60% 이상을 사서자격증 소지자(1급 및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성¹¹⁾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사서수는 전체 직원(7,107명)의 46.3%(3,294명)에 그치고 있다. 도서관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사서수는 7,407명이다. 그러나 현 사서수는 필요인원의 44.5%에 그치고 있다.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직원이 부족한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3명이 부족하나 사서

1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전거서, p.33.

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932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에 이어 직원이 부족한 서울시의 경우도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14명이 부족하나 사서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22명이 부족하다. 부산시의 경우 전체 직원은 98명만이 부족하나 사서수는 25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전체 직원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보다 사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인력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부족한 전체 직원수는 2003명이다. 그러나 사서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1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는 전문직 사서가 많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다운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4. 국제기준 대비 직원수

IFLA/UNESCO(이하 국제기준)는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직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국제기준은 인구 2,500명당 1명의 상근상당(FTP: Full Time Equivalent)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이 기준에 근거해 도서관에 필요한 직원수와 현재의 직원 현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국제(IFLA/UNESCO)기준 대비 직원수(2011년 기준)

시·도 (인구, 천명)	사서수 현원(명)	사서 1인당 봉사 대상수(명)	전체 직원수 (명)	직원 1인당 봉사 대상수(명)	도서관 전체 직원수 국제기준	
					필요인원(명)	부족(명)
서울시(10,026)	617	16,250	1,166	7,963	4,010	2,844
부산시(3,464)	193	17,948	464	7,172	1,386	922
대구시(2,477)	152	16,296	349	6,861	991	642
인천시(2,750)	182	15,110	344	7,902	1,100	756
광주시(1,506)	90	16,733	222	6,723	602	380
대전시(1,527)	134	11,396	245	6,084	611	366
울산시(1,105)	56	19,732	127	8,371	442	315
경기도(11,788)	752	15,676	1,519	7,615	4,715	3,196
강원도(1,496)	132	11,333	316	4,561	598	282
충청북도(1,539)	100	15,390	258	5,764	616	358
충청남도(2,104)	120	17,533	332	6,081	842	510
전라북도(1,802)	133	13,549	317	5,477	721	404
전라남도(1,772)	166	10,675	400	4,322	709	309
경상북도(2,638)	184	14,336	450	5,661	1,055	605
경상남도(3,232)	232	13,931	466	6,776	1,293	827
제주도(552)	51	10,824	132	3,943	221	89
합 계(49,778)	3,294	15,103	7,107 (35.7%)	6,999	19,912 (100%)	12,805 (64.3%)

조사·분석결과 우리나라 공립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수는 7,107명으로 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는 6,999명이다. 이는 국제기준인 2,500명당 1인 보다 2.8배 많은 것이다. 국제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총 직원수는 19,912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직원수는 7,107명으로 국제기준의 35.7%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2,805명의 직원이 더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직원수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국제기준을 가장 근접하게 충족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로 국제기준을 59.7% 충족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전라남도로 56.4%를 충족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기준 충족률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시로 28.7%에 불과하고, 그 다음은 서울시로 29.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시의 도서관은 인구가 적은 광역자치도의 도서관 보다 국제기준의 직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국내외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서관들은 봉사대상 인구는 많으면서 직원수는 적은데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우 대도시에도 소규모 도서관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 한 도서관당 서비스 대상 인구가 적으면서도 개별 도서관에 직원이 5~6명씩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지자체 도서관의 국제기준의 직원수 충족율은 비슷하다고 하겠다.

5. 세 기준에 의한 직원수 비교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직원 충원율이 세 가지 기준, 즉 한국도서관법시행령에 의한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이하 법정 기준), 한국도서관기준(이하 도서관 기준)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세 기준에서 한국도서관기준의 전체직원수 충원율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법정기준과 도서관 현장의 직원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아 법정기준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3년에 새로운 한국도서관기준이 마련되면서 직원배치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도서관기준의 사서수 충원율은 44.5%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현장에 전문직인 사서직원 보다는 일반직원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전체 직원에서 사서직원 비율은 46%에 해당된다.

한편, 법정 사서직원 충원율은 46.0%로 도서관기준의 사서충원율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법정 사서충원율을 계산할 때 필요 이상으로 법정사서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법정 사서충원율을 계

산할 때 면적과 장서량 두 가지를 모두 기준으로 삼았다면 법정 사서충원율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국제기준의 직원충원율은 35.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이 양적으로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국제기준 직원충원율이 낮은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크면서 그 수는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의 경우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한 지자체 내에 많이 있고, 도서관이 봉사하는 봉사대상 인구가 적다. 따라서 인구 대비 도서관 직원의 수가 많고 그 결과 국제기준의 직원 배치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세 가지 기준의 네 가지 전 항목에서 50%이상의 충원율을 보이는 지자체는 16개 시도 중에서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세 기준에 의한 전체 직원수 및 사서수 비교

시.도	전체 직원수/ 사서수 현원(명)	법정 사서직원수 (충원율%)	도서관기준		국제기준 전체 직원수 (충원율%)
			전체 직원수 (충원율%)	사서수 (충원율%)	
서울시	1,166/617	867(71.2)	1,680(69.4)	1,339(46.1)	4,010(29.1)
부산시	464/193	331(58.3)	562(82.6)	443(43.6)	1,386(33.5)
대구시	349/152	246(61.8)	404(86.4)	320(47.5)	991(35.2)
인천시	344/182	290(62.8)	469(73.3)	375(48.5)	1,100(31.3)
광주시	222/ 90	188(47.9)	243(91.4)	194(46.4)	602(36.9)
대전시	245/134	227(59.0)	267(91.8)	217(61.8)	611(40.0)
울산시	127/ 56	89(62.0)	184(69.0)	146(38.4)	442(28.7)
경기도	1,519/752	1,954(38.5)	2,082(73.0)	1,684(44.7)	4,715(33.5)
강원도	316/132	359(36.7)	351(90.0)	298(44.3)	598(52.8)
충청북도	258/100	275(36.4)	309(83.5)	256(39.1)	616(41.9)
충청남도	332/120	388(30.9)	421(78.9)	353(34.0)	842(39.4)
전라북도	317/133	373(35.7)	394(80.5)	330(40.3)	721(44.0)
전라남도	400/166	420(39.5)	442(90.5)	374(44.4)	709(56.4)
경상북도	450/184	465(39.6)	546(82.4)	454(40.5)	1,055(42.7)
경상남도	466/232	523(44.4)	616(75.6)	503(46.1)	1,293(36.0)
제주도	132/ 51	169(30.2)	140(94.3)	121(42.1)	221(59.7)
합계	7,107/3294	7,164(46.0)	9,110(78.0)	7,407(44.5)	19,912(35.7)

6. 우리나라와 영국의 인력 현황 비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해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잘 발달한 영국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 중 도서관 직원수와 같은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국가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영어 사용국가 중 우리나라와 인구나 국토 면적이 비슷한 국가는 영국이다. 따라서 영국을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분석 결과 영국은 공공도서관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4.97배 많은 3,809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어 인구 16,000명당 하나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구 64,980명당 하나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약 22%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도서관은 거의 5배(500%) 더 많다.

직원수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7,107명인데 반해 영국 공공도서관에는 우리나라보다 3.63배 더 많은 25,7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중 사서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총 3,294명을 두고 있는데, 반해 영국 공공도서관에는 우리나라 보다 1.61배 더 많은 총 5,298명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1관당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관당 전체 직원수는 우리나라가 9.28명이고 영국이 6.76명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서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4.30명이고 영국은 1.39명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해석은 양국 간의 도서관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만 옳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영국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개관당 직원 및 사서수는 영국보다 많지 않다. <표 9>과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2,536㎡이고, 영국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548㎡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규모에서 4.65배 더 크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규모가 크면 그 도서관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도서관 규모 면에서 4.65배 더 크다면 1관당 직원수는 산술적으로 영국 도서관의 직원수 6.76명보다 4.65배 더 많은 31.44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직원수는 9.28명에 그치고 있어 규모를 반영한 가상 직원수에 있어서 영국 도서관의 3분의 1수준(29.5%)에 불과하다.

사서수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영국보다 4.65배 더 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영국 도서관의 1관당 사서수인 1.39명보다 4.65배 더 많은 6.46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사서수는 4.3명으로 영국 도서관의 3분의 2(66.56%)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전체 직원 중에서 사서의 비율이 46.3%로 영국의 20.6%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직원 구성에서 사서의 비중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공공도서관의 근무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생길 수 있는 해석이라고 하겠다. 영국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직원의 경우도 도서관 밖으로의 부서 이동이 거의 없다.

따라서 사서가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도 한 도서관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도서관 근무 경험이 많아 사서를 도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도서관 인력에서 사서의 비중이 크지 않아도 도서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인력 중에서 사서만이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도서관에 근무하여 도서관의 필수 인력이 된다. 반면에 다른 직원은 수시로 도서관밖 부서이동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 근무 경력이 짧아 사서를 도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서관 밖으로 이동이 거의 없는 사서의 비중이 전체 직원 구성에서 커야 한다.

<표 9> 우리나라와 영국의 도서관 및 인력 현황 비교

구분	한국	영국 ¹²⁾	비교(한국 : 영국)	
도서관수	766관	3,809관 ¹³⁾	1 : 4.97	
평균연면적	2,536㎡	548㎡ ¹⁴⁾	1 : 0.22	
인구	49,778,000명	60,970,000명	1 : 1.22	
	1관당 : 64,980명	1관당 : 16,000명	1 : 0.25	
직원수	사서	3,294명(46.3%)	5,298명(20.6%)	1 : 1.61
		1관당 : 4.30명	1관당 : 1.39명	1 : 0.32
	기타	3,813명(53.7%)	20,470명(79.4%)	1 : 5.37
		1관당 : 4.98명	1관당 : 5.37명	1 : 1.08
	합계	7,107명(100%)	25,768명(100%)	1 : 3.63
		1관당 : 9.28명	1관당 : 6.76명	1 : 0.73

V. 맺음말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력을 얼마나 확충하고 있는지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세 가지 기준, 즉 도서관법시행령, 한국도서관기준, 그리고 국제기준인 IFLA/UNESCO 가이드 라인을 분석을 위한 척도로 삼았다.

조사·분석 결과 우리나라 766개 공립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7,107명으로 1관당 평

12) 2007년 3말 기준.

13) 4,540개관에서 이동도서관(573개관)과 일주일에 10시간 미만 개관하는 도서관(158개관)을 제외한 수입.

14) 4,540개관에서 이동도서관(573개관)을 제외한 3,967개관의 평균임. 영국 공공도서관(4,540개관)의 전체 평균 연면적을 계산하는데 있어, 4,540개관에서 일주일에 10시간 미만 개관하는 도서관(158개관)의 연면적만을 빼 수 없어 전체 도서관수(4,540개관)에서 이동도서관(573개관)만을 빼 3,967개관의 평균임.

균 9.28명이다. 전체 직원 중 도서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직원은 46.3%에 해당하는 3,294명으로 1관당 평균 4.3명이다. 행정직원은 전체 직원의 17.9%로 1,272명이고, 전산직을 포함한 기타 직원은 전체 직원의 35.8%로 2,541명이다.

공공도서관의 직원 충원율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한국도서관기준을 가장 잘 충족(78%)하고 있고, 그 다음은 도서관법시행령(46%)이고, 가장 낮은 충족율(35.7%)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기준이다.

도서관 연면적을 기준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수를 산정하는 도서관법시행령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사서수는 7,164명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서수는 전체 필요 사서수의 46%에 해당하는 3,294명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 사서직원 충원율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 대체로 광역시의 사서직원 충원율은 높고 광역자치도의 충원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시는 사서직원 충원율이 가장 높아 71.2%이고, 그 뒤를 이어 울산시와 대구시는 각각 62%와 61.8%이다. 반면에 제주도는 사서직원 충원율이 가장 낮아 30.2%에 그치고 있고, 그 다음은 충청남도로 30.9%에 불과하다.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을 근거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직원수를 파악한 결과 그 수는 9,110명이다. 그러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필요 인원의 78%에 해당하는 7,107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인력 확충에 있어서 한국도서관기준을 80%가까이 충족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3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우리나라 도서관 인력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도서관기준의 인력배치 기준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서직원의 경우는 한국도서관기준에 근거할 때 필요 인원이 7,407명인데 반해 현재 인원이 3,294명에 불과해 필요 인원의 44.5%에 그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세 기준 중에서 국제기준 충족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직원수(7,107명)는 국제기준(19,912명)의 35.7% 수준에 불과해 국제기준과 비교했을 때 도서관 직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직원 현황을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그리고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 인력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에 의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이 부족함이 명확히 밝혀졌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둘째, 도서관 직원 중에서 특히, 사서직원의 수가 크게 부족함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도서관 직원을 선발·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사서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겠다. 사서는

도서관 전문가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따라서 같은 인건비가 소요된다면 일반직원이 아닌 사서직원을 채용·배치하는 것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

셋째, 지금까지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시설 투자와 함께 인력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겠다.

넷째,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운영 인력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공공도서관의 인적자원 영역의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공공도서관 9개 영역의 평가 배점은 총 900점인데, 이중 인적자원 영역의 평가 배점은 11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지자체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인적자원 평가 영역 중 '사서 및 직원 현황'의 평가 배점을 현재 보다 20점 높은 5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의 인적자원 영역의 평가 배점이 총 130점이 되어, 결과적으로 인적자원 충원율이 높아야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방공무원총정원제나 총액임금제를 규정한 법령에 도서관의 사서직원 정원에 대한 규정을 예외조항으로 둔다. 현재 지방공무원총정원제나 총액임금제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로 신축한 도서관에 배치할 직원을 채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도 제2조(총정원) 6항 나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과 같이 예외조항이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총정원제나 총액임금제를 규정한 법령에 도서관의 사서직 정원에 대한 규정을 예외조항으로 둔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서관의 직원수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

참고 문헌

곽철완 등.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에 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3호(2012. 9), pp.211-2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2013.3.23][대통령령 제24461호, 2013.3.23, 일부개정].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인용 2013. 11. 15].

노영희, 안인자. "사서인력의 경력이동 및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4호(2009. 12), pp.147-167.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도서관법시행령 [시행 2013.3.23][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타법개정]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안). 2013.(미간행보고서)
- 윤희윤. “국내외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3), pp.73-95.
- 윤희윤.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 개정안 연구.” 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1호(2012. 2), pp.55-76.
- 정동열. 도서관경영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 한국문헌정보학회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CIPFA. Public Library Statistics. London : CIPFA, 2009.
- Gill, Philip.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Editorial Committee on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4.
- Enforcement Decree on the Personnel Ceiling of Government Officers. [enforcement 2013.3.23][law 제24461호, 2013.3.23]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enforcement 2013.3.23][law 제 24453호, 2013.3.23]
- Jeong, Dong-Youl. *Introduction to Library Management*.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7.
- Korean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2013 edition.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 Korean National System of Library Statistics. <<http://www.libsta.go.kr/>> [cited 2013. 11. 15].
- Kwak, Chul-Wan, et al. “A Study of the Librarian Personnel for Public Libraries on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3, No.3(Sept. 2012), pp.211-230.

- Noh, Young-Hee, Ahn, In-Ja. "A Study on Career Movement and Career Development of Librarians Workforc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6, No.4 (Dec. 2009), pp.147-167.
-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2 National Evaluation Indicators for Libraries Operation*. Seoul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4~2018)*. Seoul :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3. (unpublished)
- Yoon, Hee-Yoo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1(Mar. 2011), pp.73-95.
- Yoon, Hee-Yoon. "A Study on the Review of Staffing Standards for Korean Public Librarie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6, No.1(Feb. 2012), pp.55-76.